의 안 번 호	제94호
의결 연월일	2017. 12. 20.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17일 논산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2월 20일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예산담당관)

가. 제안이유

○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채 ZERO 유지에 기여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방채가 없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규정 신설 (안 제2조제2항)

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설정 (안 제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 략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